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5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정점식 · 박충권 · 박덕흠
주호영 · 인요한 · 서천호
조지연 · 김정재 · 정희용
김태호 · 김도읍 · 김성원
구자근 · 신성범 · 김장겸
김미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 · 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 ·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 설명 · 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 ·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 · 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

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화등의 표시·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경우 해당 사항

제2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화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가.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 나. 소비자 후기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게시하는 행위

제32조의2제1항제2호 중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을 “현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1.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u>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경우 해당 사항</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행위)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재화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u> 가. <u>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u> 나. <u>소비자 후기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게시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 ----- -----
--	--

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

-----현저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45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7.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5항-----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6항----- -----. ⑨ -----제6항----- ----- -----.
--	---